

〈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과제(아이디어) 제안서〉

규제 혁신 제안 과제	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기관 보유 지분율 기준 규제 개선
분 야	☐ 연구개발 ☐ 신산업 ☐ 기술창업/ ☐ 기업성장 ☐ 개발관리/ ☒ 기타 기술사업화 인프라
관련 규정·제도/법령	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4호
소관 기관	과학기술정보통신부
규제 내용	○ 현행법상 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때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은 10%로 규정되어 있으며,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때도 최소 지분율을 5년간 5% 이상 보유해야 연구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
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	○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할 시, 의무지분율 10% 이상 보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, 기술에 대해서도 TRL 단계가 낮아 사업화 비용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, 기관에 지분율 10% 이상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어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음
규제개선 방안	○ 설립 시,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의무지분율을 10%로 규정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, 최소 지분율 5%에 대해 5년간 보유하는 규정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- 최소 지분율 비율은 완화하되, 사업화 후 제품화되어 매출발생 시 일정비율로 일정기간동안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기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기대효과	○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허들이 현행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며,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도 사업화를 통해 제품화가 되어 매출이 발생되어야만 기술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외에 기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비고	-